

「2024 인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지역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, 기술개발이 가능한 인천 블록체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4년 6월 3일
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인천 지역특화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고, 인천 지역 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고도화 컨설팅 지원
- (지원규모) 5개사(기업당 1억원)
-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 ~ 2024. 11. 30.(토)
- (지원대상) 인천 지역 블록체인 중소기업
 - ※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며, 주관·참여 모두 인천기업
- (지원조건) 인천 소재 기업 또는 인천 이전·설립 예정 기업(본사/지사/연구소)
 - ※ 타지역 기업은 협약체결일 기준 1개월 이내 인천시 이전·설립 필수
- (지원내용) 인천 지역특화산업*과 접목한 블록체인 기반 IT기술 또는 응용서비스 개발 및 기술고도화 컨설팅 지원

* 인천 지역특화산업 : 관광, 문화콘텐츠, 제조업 등

- 인천 지역특화산업 : (예시) 관광, 문화콘텐츠, 제조업, 바이오, 반도체, 로봇, 디지털·데이터, 항공 등의 분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인천광역시 조례 필요

II

지원대상

- 인천 소재 블록체인 중소기업(본사/지사/연구소)
 -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
- 인천 지역특화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업
-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, 주관 참여 모두 인천기업으로 한정
 - ※ 개인사업자는 참여만 가능
- 협약체결일 기준 1개월 이내 인천지역 내 본사·지사·연구소 이전 또는 설립 가능한 기업(확약서 제출)
 - ※ 1개월 이내 인천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사무공간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환수
- (지원제외대상) 접수마감일 기준, 주관 및 참여 동일 적용

①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

- (㉠)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(㉡)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타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 및 기술료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,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이 있는 경우
 - (㉢) 신청 기업 및 대표, 총괄책임자 등이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 - (㉣)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'T6'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, 단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
 - (㉤) 자본전액 잠식,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,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②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(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)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
 - ③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,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
 - ④ 접수일 기준 인천테크노파크(ITP)에 채무(임차료, 관리비 등)가 있는 경우
 - ⑤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III

세부 지원내용

- (지원규모) 5개사, 총 5억원
-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4년 11월 30일
- (지원금액) 기업당 1억원, 기업부담금 매칭 필수

구분	사업비	금액	내용
1개 기업당	총사업비 (100%)	133,340,000원	■ 정부지원금(75%) + 기업부담금(25%) = 총사업비
	정부지원금 (75%)	100,000,000원	■ 사업 착수 시 정부지원금 70%(선금) 지급하고,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30%(잔금) 지급
	기업부담금 (25%)	최소33,340,000원	■ 총사업비의 25% 자체 부담하고, 기업부담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 ※현물30,000천원, 현금3,340천원
	기타	부가세	■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(기업부담)

※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기준

※ 컨소시엄의 경우 기업부담금 분담비율은 자율 결정

- (지급방식) 선금 70% 지급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잔금 30% 지급
 - 사업비 편성 및 사용지침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의 [별표 1]에 따라 편성(간접비 편성 불가)
 - 중간평가 결과 ‘지원중단’ 사업의 경우 지원금 일부·전액 환수
- (지원조건) 인천 지역특화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개발이 가능한 인천 지역 내 블록체인 중소기업
- (모집분야) 인천시 지역특화산업* 분야 자유공모

* 인천 지역특화산업 : 관광, 문화콘텐츠, 제조업 등

- 인천 지역특화산업 : (예시) 관광, 문화콘텐츠, 제조업, 바이오, 반도체, 로봇, 디지털·데이터, 항공 등의 분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인천광역시 조례 필요

- (사업목표) 발표자료 및 사업계획서 내 제안 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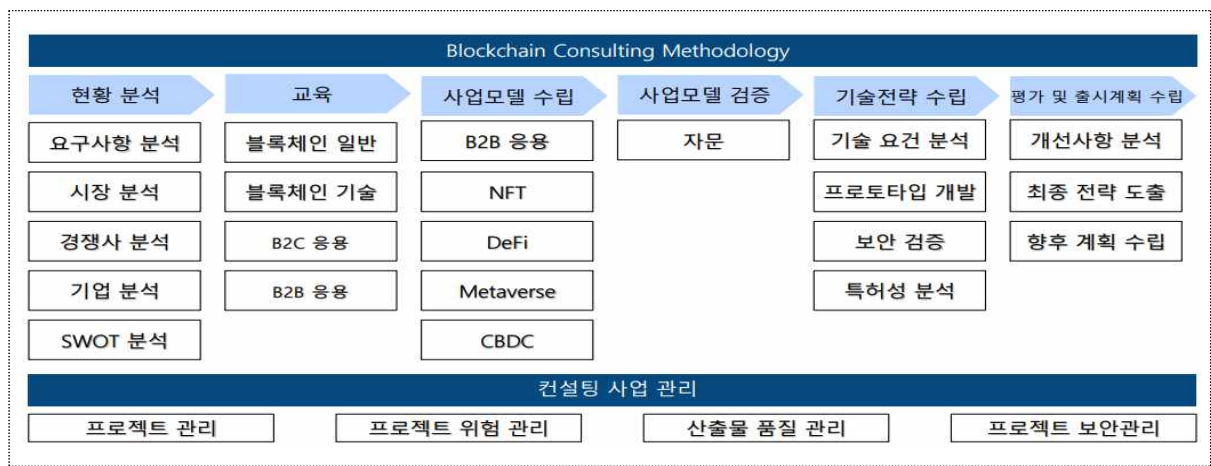
구분	목표명	목표치	측정방법
1	신규인력채용	1명 이상	4대보험 가입자명부
2	기술고도화 컨설팅	1건	결과보고서
3	개발 제품·서비스 도출	1건 이상	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시연
4	사업계획서 명시한 사업 목표	100%	목표달성 여부 확인 가능한 자료

※ 인천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 개소식(11월말 예정)에서 시연이 가능해야 함

- (지원내용) 블록체인 기술개발 자금 및 기술고도화 컨설팅 지원
 - 인천 지역특화산업과 접목한 블록체인 기반 IT기술 또는 응용서비스 개발자금 지원(자유공모)
 - 인천 지역특화산업 연계 개발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자금 지원(지원사업비 내 포함)
- ※ 컨설팅 관련 필요성, 선정업체, 선정사유, 컨설팅 내용 등 컨설팅 추진에 대한 내용 발표자료 및 수행계획서 명시

◇ 블록체인 기술고도화 컨설팅 안내사항

- (지원개요) 지원기업이 기술개발에 필요로 하는 항목에 맞추어 컨설팅 업체를 선정 및 컨설팅 지원
- (지원내용) 블록체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기획, 기술 활용, 도입 전략, 서비스 개발, 품질검증 등 블록체인 제품·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(세부 지원내용)
 - (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도입 전략 컨설팅) 블록체인 신기술 도입 및 기술 적용·활용을 위한 맞춤형 전략 컨설팅 지원
 - (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컨설팅) 기존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용 및 개발 방법, dApp 개발 등의 컨설팅 지원
 - 그 밖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



- (필수비용) 사업비 구성시 필수로 책정해야 하는 비용
 - 블록체인 기술고도화 컨설팅 금액(일반연구비 내 자율편성)
 - 회계정산 위탁수수료(일반수용비 내 100만원 편성)
- ※ 필수비용 금액은 발표자료 및 수행계획서 제시

IV

평가절차 및 기준

○ (평가방법) 5인 이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

- 발표평가 : 10개사 내외(2배수)

- 지원기업 2배수 초과 접수 시 서면평가 진행 후 발표평가 실시
- 지원기업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면·발표 합쳐 종합평가 실시

- 발표시간 : 총 20분 PT발표(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)

※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

○ (선정기준)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지원대상 기업으로 하며,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

○ (평가항목 및 배점)

평가항목 및 배점		세부평가내용	배점										
사업계획 (45점)	목적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부합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품 및 서비스 기획 적절성 - 사업계획서 내용의 구체성 - 사업 수행 목표와 적절성 	10										
	지원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술 및 서비스의 현재 진행상황, 애로 사항, 시급성 등 지원의 필요성 	15										
	사업 준비정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품 및 서비스의 구현정도 ■ 목표시장 및 시장진출을 위한 준비성 	10										
	예산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추진 및 관련 지침에 맞춘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	5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비 구성 중 기업부담금 매칭 규모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5점</th> <th>4점</th> <th>3점</th> <th>2점</th> <th>1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매칭비율</td> <td>45% 이상</td> <td>40% 이상</td> <td>35% 이상</td> <td>30% 이상</td> <td>25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5점	4점	3점	2점	1점	매칭비율	45% 이상	40% 이상	35% 이상	30% 이상	25% 이상
구분	5점	4점	3점	2점	1점								
매칭비율	45% 이상	40% 이상	35% 이상	30% 이상	25% 이상								
사업수행 및 실현가능성 (45점)	사업 수행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세부 수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방안 ■ 조직, 참여인력 구성 및 전문성 ■ 기업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경험 등 	15										
	수행계획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안하는 사업내용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고도화 컨설팅 추진목표,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적정성 	10										
	사업목표 달성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■ 과제 기간 내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가능성 	15										
기술성 (10점)	기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제안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적 우수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 가능성,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	10										
기대효과 (5점)	성과파급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완료 이후 기대효과 및 상용화 계획의 수행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진입, 매출성장, 신규인력 채용, 사업 확산 가능성 등 - 사업성과 분석,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안 	5										
합 계			100			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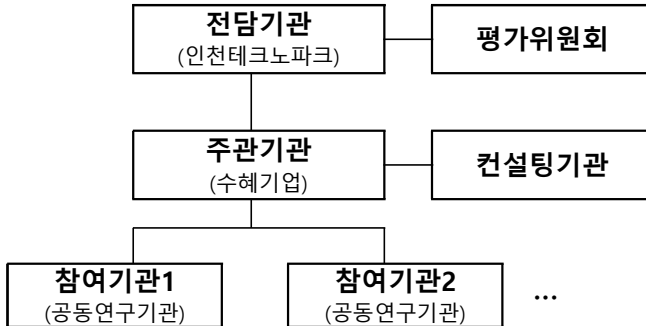
※ 점수가 동일한 경우, ①사업수행 및 실현가능성, ② 사업계획, ③ 기술성 순으로 선정

※ 발표상기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변동될 수 있음

V

추진체계 및 절차

○ (추진체계)



추진기관별 역할	
구분	주요업무
전담기관	· 수혜기업 선정, 협약체결(주관기관과 공동) · 착수, 중간점검 및 평가, 사업관리 등
평가위원회	· 과제 평가, 세부내용 검토, 우선순위 부여 등 심의 · 과제 추진범위, 목표 등 최종 사업조정 및 확정
주관기관	· 협약체결(전담기관과 공동), 사업수행 · 인천 지역특화산업 연계, 블록체인 기술개발 · 컨설팅기관 선정 및 기술고도화 컨설팅 수행
컨설팅기관	· 블록체인 신기술 도입 및 기술 적용·활용 등 기술고도화 컨설팅 실시

○ (추진절차)

추진내용	주요내용	추진일정	
사업공고	- 지원기업 모집공고(ITP홈페이지, Biz-OK 등)	6월	
신청접수	- 신청서 접수 및 기업별 신청서류 확인	6월	
적격성 검토	- 신청기업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실시 · 체납여부, 미제출 서류 등 확인	6월	
선정평가	- 평가위원회 구성(5인 이상) 및 선정평가 실시 · 지원기업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면·발표 합쳐 종합평가 실시 · 지원기업 2배수 초과 접수 시 서면평가 진행 후 발표평가 실시	6월	
협약체결	사업비 지급 (1차)	- 선정결과 안내(선정평가의견 포함) - 수정수행계획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 -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(선금 70%)	6월
사업수행	-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-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· 사업비 집행률 점검, 중간성과 모니터링 등	7월~11월	
중간점검 및 모니터링	사업비 지급 (2차)	- 중간평가 실시 · 평가위원회 구성(5인 이상) · 사업 추진실적, 지원금 집행현황 등 점검 -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(잔금 30%) ※ 평가결과 '지원중단' 경우 지원금 환수	9월
최종평가 및 정산	-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· 결과보고서, 정산보고서 등	12월	

※ 지원절차 및 세부일정(점검, 평가 등)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별도로 정함

VI

신청 및 문의처

○ (신청기간) 2024. 6. 3.(월) ~ 2024. 6. 24.(월) 13:00까지

※ 한국 표준시(KST) 기준, 제출기간 이후 접수 불가

○ (접수방법) 온라인 접수 (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
○ (제출방법) 제출서류 PDF 파일로 업로드

구분		주요내용
1단계	회원가입	- Biz-OK에 등록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규 기업회원 가입 - 본인인증(휴대폰 또는 I-PIN) 필요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정보 등 등록
2단계	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	- '기업지원→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'에서 해당 사업명 검색 후 클릭하여 공고문 및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
3단계	문서 작성 및 제출파일 업로드	- 다운받은 신청서 및 기타서류 등 작성 후 파일 및 증빙서류 업로드 ※ PDF 파일로 업로드
4단계	접수완료 확인	- 마이페이지의 온라인 기업지원 신청내역에서 접수 확인 ※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접수 확인 가능

※ Biz-OK 홈페이지 관련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내 매뉴얼 및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문의

◇ 유의사항

- 온라인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온라인접수 마감은 2024년 6월 24일(월) 13:00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)
- 온라인접수 완료 후에는 온라인 접수내용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 후 온라인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온라인접수하신 총괄책임자의 E-mail 또는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-mail로 문의 바랍니다.

○ (문의처) 인천테크노파크 블록체인센터

담당자	연락처	메일주소
블록체인센터 김호태 과장	032-725-3503	ho34151@itp.or.kr

※ Biz-OK 홈페이지 관련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내 매뉴얼 및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문의

VII

제출자료

No	제출서류	내용	비고
1	참여신청서	서식 제1호	필수
2	수행계획서	서식 제2호	필수
3	발표자료	자유양식(ppt)	필수
4	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	서식 제3호	필수
5	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	서식 제4호	필수
6	의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	서식 제5호	필수
7	참여제한대상 여부 확인서	서식 제6호	필수
8	기업 이전 확약서	서식 제7호	필수
9	기업부담금 확약서	서식 제8호	필수
10	지원사업 공동수행 협약서	서식 제9호	해당시
11	사업자등록증	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필수
12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	국세, 지방세, 4대보험 완납 증명서	필수
13	4대 보험가입자명부 1부	모집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임·직원 확인용	필수
14	기술/특허 등 보유기술 증빙서류	보유기술/특허/출원/인증/MOU/실적 등 증빙서류	해당시
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(관련 규정)

-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
-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
-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
-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
-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

○ (협약 안내)

- 최종 수혜기업으로 결정될 경우 전담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
-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, 「국가계약법 시행령」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※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정부지원금 전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,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
- 협약 시 이슈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‘평가위원회’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

○ (사업관리 및 보고)

- 사업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를 평가하며, 필요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
 - ※ 「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」 제10조(수행기관 기금사업 점검실시)
-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목표, 실행예산 등 추진 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, 전담기관에 계획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

○ (사업비 집행 및 관리)

- 사업비란 정부지원금(국비)과 기업부담금(현금/현물)을 합산한 전체 총액을 뜻함

-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간은 협약서 상의 수행기간으로 함
 - ※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음
-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지원사업 전용 계좌(법인명의)를 반드시 개설해야 함
- 사업비 집행 시 해당 지원사업 전용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(또는 신용카드)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함
- 지원받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,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
- 모든 지출은 지출 원인행위 및 지출결과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함
 - ※ ‘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’ 의 [별표2]의 정산시 제출서류 기준에 따를 것
- 수혜기업이 타기업·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,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
- 수혜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함
-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후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사본 일체를 인천 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인천테크노파크가 불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금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
- 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목표(정량·정성)와 최종 사업비의 비목이 추가·변경·삭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의견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정산 시 총 사업비 집행 잔액과 불인정 금액은 전액 지원금의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여 반납
 - ※ 단, 불인정금액이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발생 이자만 반납
- 사업비의 증빙서류 원본은 사업 종료 후 5년 간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, 추후 인천테크노파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

- 사업비 편성은 「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의 [별표 1]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할 것(간접비는 편성 불가)
 - 편성된 사업비로 관련 기업 간 제품/시스템/서비스 등 거래 불가
 - ※ ‘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’ 의 [별표3]의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따른 것
 - 지원금 사용 원칙 및 영수증 처리, 증빙서류 인증 범위 등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금을 매칭(현금·현물) 하여야 함

◆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

(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,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)

1.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24.2)의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

비영리기관	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또는 공기업
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	연구개발비의 75% 이하	연구개발비의 70% 이하	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
- * ‘중소기업’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
- * ‘중견기업’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
- * ‘공기업’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·지방공사·지방공단임

2.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기준

-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,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

비영리기관	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또는 공기업
-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% 이상	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
- 참여기업 참여인력인건비 연구시설·장비비, 기술도입비, 연구재료비는 현물 부담 가능

○ (사업계획의 변경)

-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인천 테크노파크 사업담당부서에 서면(공문)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 - 사업계획의 변경 시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은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15호, 2022. 2. 17)에 따름
- 승인·통보사항에 해당하는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변경을 신청해야 함

※ 사업계획서의 초기 의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하되, 자체부담금 및 총 사업비의 변경은 불가함

<승인사항 및 통보사항 구분>

구분	내용
승인사항	가. 사업책임자(대표자)의 변경 나. 최종 목표의 변경 다. 사업비 중 비목간 변경 라. 사업비의 운영비, 연구용역비의 20% 이상 증액 마. 사업비 총액의 변경 바.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사. 비목 중 인건비 등 세목간 변경 아. 취득가액 3천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) 이상인 기자재 및 시설 중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기자재 및 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
통보사항	가. 수혜기업 및 참여기관의 주소(연락처), 대표자, 명칭의 변경 나. 참여연구원 변경 다. 직접비의 10% 이내에서 연구과제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라.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에 협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

○ (성과물 및 기타사항)

-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, 시설물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 수행기관 소유
- 사업 관련 언론보도·홍보는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전 합의 후 진행
- 본 사업수행 결과 및 실적은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, 인천테크노파크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
- 수혜기업은 사업종료 이후, 개발 기술·제품의 사업화 현황, 매출액, 고용 창출 등의 실적 자료를 요청할 시 제공해야 함

○ (정산절차)

- 수혜기업은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불인정 금액·반납금액 등 정산해야 한다.
 - ※ 수혜기업(주관)이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하며, 사업예산 계획 작성 시 예산에 포함하여 신청(회계감사 비용으로 일반수용비(100만원) 편성 필수)
 - ※ 사업수행지침 및 정산보고서, 지출 근거서류(영수증, 계좌 거래내역 등), 기타 지출 내역이 해당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빙서류 등 회계감사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출
- 수혜기업은 회계감사 및 정산결과보고서를 직인 날인 하여 전자파일을 인천테크노파크에 제출

- ※ 정산보고서 및 영수증 사본 일체를 순서대로 첨부(바인딩하여 1부 제출)
- 수혜기업은 회계감사 후 최종 정산금액을 인천테크노파크 지정 계좌로 입금 후 최종 정산잔액 송금내역서 및 송금 영수증 제출
- ※ 정산내역이 수록된 엑셀 파일을 e-mail로 별도 전송
- 인천테크노파크가 정산결과를 검토 시(필요시 실사), 오류가 발생 시 회계감사에게 재정산 요청

○ (정산 및 반납대상 금액)

- 사업기간 종료 후 총사업비(정부지원금+기업부담금) 미집행 금액, 이자발생액, 불인정 금액 등은 지원금과 자부담금 비율에 상관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여야 함
- 평가 결과 점수미달, 중도해지 및 과제수행 종료 후 인지된 문제 과제의 제재·환수에 관한 사항, 정산·환수금 관련 조치 등에 대해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·심의할 수 있음
- ※ 전문위원회는 인천테크노파크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따르며,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(위원장 1인, 전문위원 4인)으로 구성

○ (정산보고서 제출서류)

- 정산보고서 1부
 - 정산 세부내역서 포함
 - 지출원인 근거서류, 영수증, 계약서 등 회계감사 시 제출 된 서류 일체 사본
- 사업비 거래내역 확인서 각 1부(개설은행 발급)
- 통장사본(전체 페이지) 또는 거래내역서 사본
- ※ 위 서류를 순서대로 바인딩

○ (일반 사항)

-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테크노파크나 타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- 컨소시엄 내 하나의 기업(관)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(신청자격 미달)
- 과제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업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공개할 수 있음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조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은 반드시 날인 요망
- 선정된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를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
- 과제 결과물에 대해 홍보·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
-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가상자산 관련 사업(코인 관련) 지원불가(일부 내용포함 동일)